

# 2022년 2차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공고

인제군가족센터에서는 생후3개월부터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적극적인 파견 돌봄을 제공할 자격증 소지한 아이돌봄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2. 5. 16

인제군가족센터



## 1. 채용 분야

- 가. 모집분야 : 아이돌보미
- 나. 모집인원 : 00명 내외

## 2. 자격요건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
-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- 라. 「의료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- 마.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(재활동자), 미등록자(미활동자)

## 3. 직무내용

- 가.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
  - ① 영아종일제서비스 : 이유식 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
  - ② 시간제서비스 :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/간식 챙겨주기
  - ③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: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
- 나. 근로시간: 월요일 ~ 토요일, 1일 8시간 이내,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

## 4. 활동수당

### 가. 돌봄활동수당

서비스유형	시간제/종일제	질병감염아동	추가수당
활동수당	기본 9,170원(시간당)	기본+2,750원	돌봄아동수 추가시 발생

### 나.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(3주 연속/주 15시간 이상 근로)

- ① 4대 보험 적용
- ② 주휴수당 , 연차, 퇴직금 발생

### 다. 근무개월에 따른 명절수당 지급, 활동교통비 지급

## 5. 전형일정

◆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활동 절차

▷ 신청 → 서류 심사 → 인·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→ 필수교육 및 현장실습 → 근로계약체결  
→ 돌봄활동(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)

## 6. 접수 및 면접

가. 접수기간: 2022년 5월 23일(월) ~ 5월 30일(월)

나. 면접시험: 2022년 5월 31일(화) (14:00, 인적성검사 실시포함)/ 서류심사 합격자

다. 면접결과: 2022년 5월 31일(화) 개별 통보 예정.

라. 접수방법:

- ① 아이돌보미 홈페이지(<https://care.idolbom.go.kr/dolbomi>) 접수  
- 회원가입 ▶ 지원 및 양성 ▶ 모집공고 ▶ 2022년 인제군 아이돌보미 수모집 ▶ 지원신청
- ② 방문접수 (평일 9시 ~ 18시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시간 내)

마. 접수장소: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하늘내린센터 3층 아이돌봄지원사업

## 7. 제출서류

### 가. 신청 시 제출서류

-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[서식 6호] 1부, 이력서 1부
- ② 주민등록등본 1부
-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

- ④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

**나.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**

-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
- ② 급여통장사본 1부
-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

**8. 기타사항**

- ①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었거나,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의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.
- ② 불합격자 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.

<b>결격사유</b>	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정신질환자 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------------	--

8. 기타문의: 아이돌봄팀 033)462-3660

